

2006. 4. 28.(금)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 4. 18. 제천시장
 - 회부일 : 2006. 4. 19.
 - 상정일 : 2006. 4. 25.(제122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자 하.

나. 주요내용

- 검토위원회의 기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검토(제2조)
 - 검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 위촉, 위원은 본부장이 위촉(제3조)
 -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제5조)
 - 검토위원회 운영 :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검토마다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제6조)
 - 검토의견 제출 :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 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 위원장에게 제출(제8조)
 - 현지조사 :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法的檢討】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지역본부장 (시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있으며
- 충청북도의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음.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견 2006년 2월 24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行政的檢討】

-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2005년 7월 8일 제정한 제천시 지역재난 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서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 재난상황관리체계와 재난복구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
-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등에 대해서 재해영향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임.
-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바, 좀더 구체적인 대상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천시재난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등 각종 조례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바, 금번에 제정되는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도 상기의 위원회 또는 조례등과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본 조례안과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당히 유사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최창규 의원)
- 위원을 40명으로 한다고 하면 대학 교수분들중에서 몇 명, 시민에서 몇 명 비율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구성이 너무 폭넓은 것은 아닌지?(최창규 의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성진 의원)
-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영향성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모든 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제시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박종유, 이재환 의원)

나. 답변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

- 자문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한 조례는 기 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제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40인 이하로 구성도록 되어 있음. 또한 구성하는 구성요인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본부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해당 공무원 관계 과에 공무원들이 10여 명 정도 구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됨.

왜냐하면 분야별로 도시과, 건축과,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등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담당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음. 또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대학교수 등을 영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20인 이상 40인 범주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 조례안에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11명정도, 분야별로 과장님들로 11명 정도 구성을 하고民間인들도 각 부서에서 추천해 주시는 11명 그래서 22명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중에서 세분 정도해서 25명 범주내에서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음. 도의 준칙도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있습니다만 이 이상도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되어 있는 인적 자원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 사항은 다시 추가로 위촉을 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위촉할 계획에 있음.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가진 그런 분들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사안별로 지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 인원이 다 모여서 검토하는 게 아니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에 보면 검토대상을 항목을 58건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검토위원회 자체가 포괄적으로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이 돼야 하고 검토하는 대상사업이 선정이 돼서 검토의뢰가 들어오면 제6조에 규정한대로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심의검토토록 되어 있음.

- 중앙자연재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에 나와 있는 검토대상이 58건이 있음. 그 중에서 중앙부서 내지는 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제천시에서 검토할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3건이 있는데,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분야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들어오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개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재해에 위험이 있겠느냐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며 사업자로부터 재해사전 저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법성 여부도 검토하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더 보완요구를 해서 확실한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사항임. 그외에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나 인허가 사항이 들어 왔을 때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사항임.
-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음.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 부. 끝.